

 신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강사 규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2px;">규정번호</td><td style="padding: 2px;">2-3-22</td></tr> <tr> <td style="padding: 2px;">제정일자</td><td style="padding: 2px;">2019.07.15</td></tr> <tr> <td style="padding: 2px;">개정일자</td><td style="padding: 2px;">2019.07.15</td></tr> <tr> <td style="padding: 2px;">책임부서/팀·계</td><td style="padding: 2px;">평생교육원</td></tr> </table>	규정번호	2-3-22	제정일자	2019.07.15	개정일자	2019.07.15	책임부서/팀·계	평생교육원
규정번호	2-3-22									
제정일자	2019.07.15									
개정일자	2019.07.15									
책임부서/팀·계	평생교육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의 학점은행제 학습과목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 임용절차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강사의 자격은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교수 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임용절차)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강사는 평생교육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제4조(임용기간)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강사의 임용기간은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강사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제6조(임무)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강사는 본 교육원에서 지정하는 교과목을 담당한다.

제7조(평가 및 등급)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강사의 평가는 본 교육원에 대한 공헌도, 강의평가결과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평가 및 등급에 관한 세부사항(별표1)과 같다.

제8조(처우) ①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강사의 강사료는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강사에게는 상여금, 정근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강사 평가표

등급 항목	매우좋다 (A)	좋다 (B)	적당하다 (C)	나쁘다 (D)	매우나쁘다 (E)
강의평가 결과					
성실도					

1. “강의평가결과”는 수강생의 강의평가서 평점을 근거로 매우좋다(A), 좋다(B), 적당하다(C), 나쁘다(D), 매우나쁘다(E)로 평가한다.

2. “성실도”는 수강생 및 다른 교강사들과의 유대관계와 본교의 애교심을 반영하고 평생교육원 원장이 평가하며, 평가등급은 매우좋다(A), 좋다(B), 적당하다(C), 나쁘다(D), 매우나쁘다(E)로 평가한다.